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합의서

주식회사 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을”)은 2019년 12월 26일에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 4 조 (자산 운용상의 의무 및 제한사항)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 4 조 (자산 운용상의 의무 및 제한사항) ① ~ ③ (생략) ④ “을”은 사업약정 기타 “갑”이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서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업약정은 “갑”이 본건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결 예정인 사업 및 대출약정서, 표준사업약정(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보증), 주주간 협약을 포함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생략) ② (신설)	제20조 (계약의 해지 및 수수료 지급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제10조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u> 1. “갑”과 “을”이 2020년 []월 []일 날인한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 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일정지연 및 임대부진에 대한 대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 “갑”의 모리츠로부터 수수료 지급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제1호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28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일괄 지급하도록 한다.
별지 2.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사유 ①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중도해지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라. (신설)	별지 2.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사유 ①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중도해지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갑”과 “을”이 2020년 []월 []일 날인한 <u>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28조에 의한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u>

제2조 (본 합의서의 효력 등)

- ① "갑"과 "을"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30일 전 서면 통보 절차 없이 본 합의서에 의해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② 본 합의서는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자산관리위탁계약 중 본 합의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변경된 내용 및 본 합의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본 합의서의 체결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관련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 ④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합의서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 면의 기명날인을 위하여 이하 여백)

본 합의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 합철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2020년 [5]월 [2]일

“갑”

주식회사 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박 영 희



“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이 창 희

